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소 방 공 무 원 징 계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방공무원의 비위정도에 상응하여 징계등 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며,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등 의결 요구기관의 참석을 의무화 하고,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징계 심의·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징계위원회 의결 시 참작사유에서 ‘평소 행실’과 ‘근무 성적’을 삭제하고 ‘협의 당시 계급’과 ‘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’을 추가(안 제16조)

나. 주요 비위 징계 감경 제한에 따른 확인서 보완(별지 제2호)

- 1) ‘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’, ‘부정청탁’, ‘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·고발 의무 불이행’도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확인서에 해당 내용 추가
- 2) 현재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고 있는 비위인 ‘소극행정’, ‘공무원 채용 관련 비위’도 확인서에 반영

다.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등 의결 요구기관 참석 의무화(안 제13조)

라. 성 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성별 고려 의무화(안 제4조)

- 1) 성폭력·성희롱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/3 이상 포함

마. 영상회의 운영 등 근거 규정 신설(안 제14조 및 제14조의2)

- 1)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경우에도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봄
- 2) 징계등 의결 기한의 연장의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
- 3)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이나 흥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
- 4)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회의 참여 시 녹음, 녹화, 촬영 및 중계방송,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,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

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
제1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및 신청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.

제1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(징계등 심의 대상자, 대리인,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, 감사원, 증인, 피해자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 및 징계 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

결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 및 서면의결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징계위원회 회의 시 소지품 제한 및 금지행위) ①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기류, 휴대전화, 기타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

2. 흉기 등 위험한 물건

②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회의에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녹음, 녹화, 촬영, 중계방송

2.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

3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

제16조제2항 중 “평소 행실, 근무 성적”을 “혐의 당시 계급, 징계등 요구의 내용,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”으로, “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”을 “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제16조에 따른 여러 정상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징계등 의결 요구한 자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확인서

1. 인적사항	소속 (현재) (협의 당시)	직위(직급) (현재) (협의 당시)	성명
2. 비위유형	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
	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
	성폭력 범죄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
	성희롱 또는 성매매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
	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
	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
	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
	소극행정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
	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
	성 관련 비위 또는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
	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함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
	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
부정청탁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·고발 의무 불이행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3. 징계부가금	대상 여부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, 대상금액(원, 배)		
	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		
4.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	공적 사항		징계 사항[불문(경고) 포함]
	포상일	포상 종류	시행처
	날짜	종류	발령처
	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
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([] 해당함, [] 해당 없음)			
5. 혐의자의 평소 행실	* 근무실적, 직무수행 능력, 직무수행 태도, 주의·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		
6. 근무 성적 (최근 2년)	(○○년○○월) 점, (○○년○○월) 점, (○○년○○월) 점, (○○년○○월) 점		
7. 그 밖의 사항	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([] 해당함 [] 해당 없음)		
	※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. 다만, 고의·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		
	*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를 기재		

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작성책임자 (소속 및 직위) (직급) (성명) (서명 또는 인)

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(신청)권자(직위)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징계위원회의 구성)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4조(징계위원회의 구성) ① 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. 다만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심문과 진술권) ① ~ ③ (생략)	제13조(심문과 진술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④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다만,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등 의결을 요구

⑤ ~ ⑦ (생략)

제14조(징계위원회의 의결) ① ·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한 자 및 신청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징계위원회의 의결) ① 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(징계등 심의 대상자, 대리인,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, 감사원, 증인, 피해자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 및 징계 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 및 서면의결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

<신 설>

제16조(징계등의 정도) ① (생략)
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, 근무 성적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

이 정한다.

제14조의2(징계위원회 회의 시 소지품 제한 및 금지행위) ①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
기류, 휴대전화, 기타 징계등
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

2. 흉기 등 위험한 물건

②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회의에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녹음, 녹화, 촬영, 중계방송

2.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
행위

3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
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
위

제16조(징계등의 정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 협의 당시 계급, 징계등
요구의 내용, 행위가 공직 내외
에 미치는 영향--- 정도 또는

을 고려하여야 한다. 제19조의3(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)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「소방공무원법」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 심사(재심사)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제16조에 따른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, 근무 성적, 공적,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</u>	<u>그 밖의 정상</u>----. 제19조의3(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제16조에 따른 여러 정상</u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운영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044